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862

발의연월일: 2025. 3. 12.

발 의 자: 우재준 · 서천호 · 박충권

임이자 · 김소희 · 인요한

조경태 • 이인선 • 이성권

배현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 하고 있어 퇴직연금제도의 확산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확정 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특례 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48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등의 설정의무 특례) 제4조제1항 본문, 제5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 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4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1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도 등의 설정의무 특례) 제4조
	제1항 본문, 제5조 및 제11조에
	도 불구하고 상시 100명 이상
	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48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48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확정
	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
	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u>제1항 및 제2항</u> 에 따른 과	<u>④</u>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